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816호 2011. 4. 4.(월)

## 차 례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-3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 ---- 1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 [032-560-4140]

##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-382호

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 『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』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3월 31일

#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#### 1. 조 례 명 :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#### 2. 개정이유

-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0.7.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“재래시장” 및 “시장활성화구역”을 “전통시장” 및 “상권활성화구역”으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제명 중 “재래시장”을 “전통시장”으로 한다.
- 제1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”으로 하고, “재래시장”을 “전통시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 2.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7. 영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
-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시장활성화구역”을 “상권활성화구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

#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은 **2011년 4월 20일까지**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경제지원과장, ☎ 560-4432 , Fax 560-4439 )에게 서면 또는 전화(팩스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“재래시장” 을 “전통시장” 으로 한다.

제1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” 을 “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” 으로 하고, “재래시장” 을 “전통시장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7. 영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

제2조제1호, 제5호, 제7호 중 “시장활성화구역” 을 “상권활성화구역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」” 을 “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」” 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, 제11조의 제목 및 본문, 제12조의 제목 및 본문, 제13조의 제목 및 본문, 제14조의 제목 및 본문, 제19조제1항 중 “시장활성화구역” 을 “상권활성화구역” 으로 한다.

제26조제2항제1호 중 “법 제11조 내지 제17조,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” 를 “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, 제20조,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” 로 한다.

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시장활성화구역” 을 “상권활성화구역” 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

제30조제1항, 제31조제1항 중 “시장활성화구역” 을 “상권활성화구역” 으로 한다.

제36조 중 “영 제35조 제3항에 의한다.” 를 “영 제35조에 따른다.” 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“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” 를 “과태료 처분통지서에” 로 한다.

제39조제1항 중 “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” 을 “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